

제193호

2010. 5

# 위험관리정보

- 방재정보
  - ✓ 미국의 화재안전담배 입법 캠페인 / 1
  - ✓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충전제 / 13
  - ✓ 특수장소의 전기설비 / 16
- 신착자료 목록 / 20
- 안내
  - ✓ 판매도서 안내 / 24

# 미국의 화재안전담배 입법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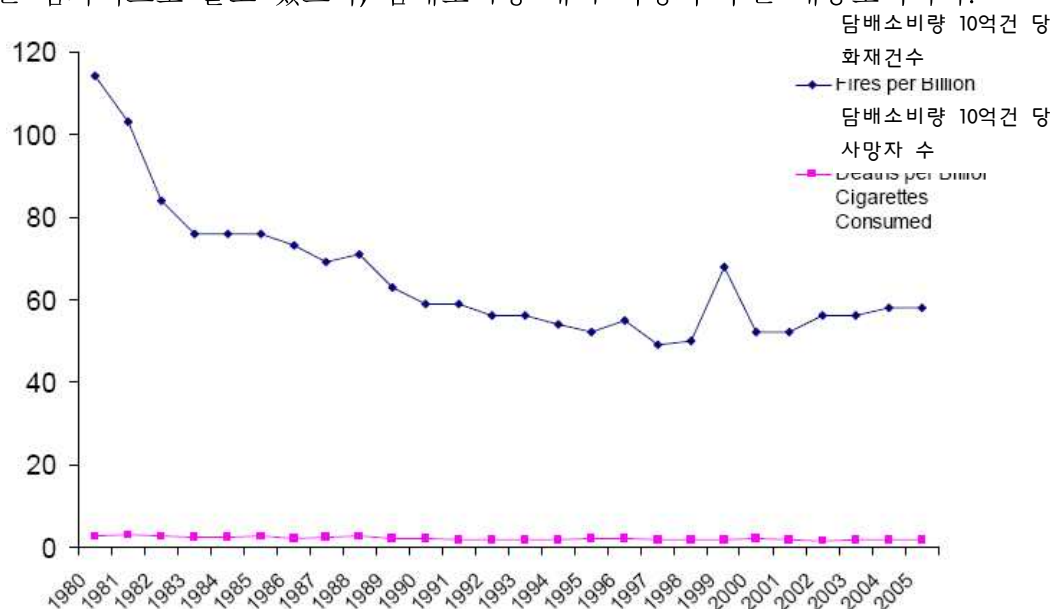
## 1. 담배화재의 문제와 현황

담배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기준 담배꽂초에 의한 화재사고는 6,412건으로 전체화재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 2009년 초 경기도는 KT&G를 상대로 담배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여 현재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화재안전담배의 제작 및 판매를 의무화하는 법률 도입 캠페인을 벌여 성공적으로 화재위험을 낮춘 담배를 흡연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코자 한다.

### (1) 미국의 담배화재 통계

미국 소방서들은 2005년 약 82,400건의 담뱃불 화재로 인해 출동하였다. 이 화재로 인해 800여명 사망, 1,660명 부상, 5억 7500만 달러의 직접 재산손해 발생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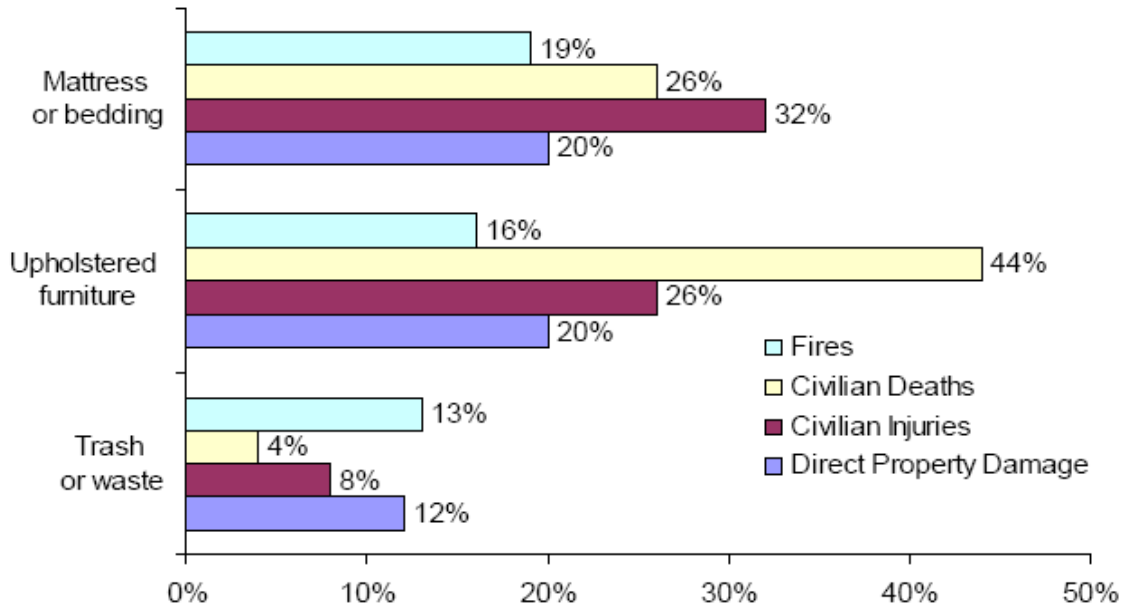
[표 1]은 미국의 담배화재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보여주고 있다. 담배소비량 대비 화재 건수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으나, 담배소비량 대비 사망자 수는 대동소이하다.



[표 1] 1980년 ~ 2005년 사이의 담뱃불 화재관련 통계 추이

[표 2]는 담배화재의 3대 발화물질에 의한 피해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과는 많이 다른 미국의 생활 패턴으로 인해, 덮개를 씌운 가구(upholstered furniture, 천 소파, 의자 등)의 겉에 씌운 천 부분에 불이 붙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표 2] 미국 가정에서의 담뱃불 화재 사고(최초 발화물질에 의한 분류)

흡연 물질에 의한 화재는 실제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난연성을 가진 매트리스 (fire-resistive mattresses) 및 난연성 가구의 판매, 대중 교육 홍보 및 성인 일인당 담배 소비량의 감소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정에서의 흡연물질에 의한 사망 위험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이다. 2003년~2006년 동안, 흡연물질로 인한 화재 희생자의 1/3(36%)이 65세 이상이었다. 흡연-물질 화재 희생자의 1/4는 본인이 피우던 담배때문에 변을 당한 것이 아니다. 희생된 비흡연자의 34%는 흡연자의 자녀이며, 25%는 이웃 및 친구, 14%는 배우자 및 파트너, 13%는 부모이다.

1980년대 중반 NFPA 연구보고서에는 화재-안전 담배가 화재 사망률의 3/4를 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화재-안전 담배 생산이 그때 시작되었다면, 현재까지 약 18,000명의 사람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2003년~2006년 동안, 가정 내 흡연-물질 화재 희생자의 40%는 상해를 입을 때 수면 중이었다. 34%는 탈출 시도, 화재 진화 또는 다른 사람을 구하던 중 상해를 입었다.

## (2) 담배화재 관련 소송

국내에서는 아직 화재안전담배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지자체로는 처

음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상태이다. 경기도는 KT&G를 피고로 한 『담배 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소장을 2009년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담배화재로 인한 재정손실 중 시장점유율에 따른 KT&G 배상책임액 796억 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경기도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담배회사의 화재예방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의제화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여 왔다.

소송수행을 맡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그 동안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등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에는 이를 외면하여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온 KT&G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본 소송을 통하여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의 국내 도입을 위한 관련입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소송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피력하였다.

경기도 측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담배제조사가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능력이 있는데도 소비와 매출만 의식해 설계상 결함이 있는 담배를 제조, 판매해 화재피해를 일으켰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KT&G는 화재안전담배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다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담배 제조판매자가 아니라 개별 소비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출처: 연합 뉴스)

## 미국의 경우

미국 등 외국의 담배안전 관련관련 소송은 2003년까지 5건이 제기됐으나, 담배의 제조상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된 적이 있다. 2003년에는 미국에서 담배 화재로 부상한 어린이 부모가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소송을 제기해 200만 달러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 2. 화재안전담배의 의무화를 위한 캠페인

### (1) 현황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화재안전담배의 제조·판매를 도입하려는 입법활동이 시작되어, 그러한 노력들이 차츰 쌓이면서 미 하원, 상원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방재기관인 NFPA가 주축이 되어 많은 화재 및 안전관련 단체들이 캠페인을 벌여 화재

안전담배 법안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많은 입법청원 및 여론 형성이 필요하므로, 많은 공공단체들이 모여 전국적인 홍보 및 계몽운동을 펼쳐 화재안전담배에 대해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실로 TJ 2004년 뉴욕 주가 최초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50개 주 가운데 1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이 법안을 실행하고 있거나 이미 통과되어 시행이 예정된 상태이다.

## (2) 화재안전담배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Fire-safe cigarettes)

NFPA가 주도하는 ‘화재안전담배를 위한 연합’은 담뱃불 화재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상해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 단체의 목적은 화재안전담배 채택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담배 제조업자에게 이미 확립되어 있는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지키는 담배만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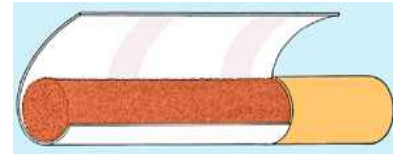
이 단체의 회원기관은 NFPA와, 담배 화재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동참하는 미국 내 화재, 안전, 복지, 의료, 행정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회원 기관 리스트 중 일부이다.

-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AARP(American Burn Association)
- ACEP(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s)
- AFSA(American Fire Sprinkler Association)
- AHCA(American Health Care Association)
- ASTM International
- Automatic Fire Alarm Association, Inc.
- CCFS(Center for Campus Fire Safety)
- CFSI(Congressional Fire Services Institute)
- HSC(Home Safety Council)
- IAAI(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son Investigators)
- IAF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Chiefs)
- ICC(International Code Council)
- NFSA(National Fire Sprinkler Association)

## (3) 화재안전담배(FSC, Fire-safe Cigarette)

화재안전담배는 방치되었을 때 연소반응이 줄어드는 특성을 가진다. 담배의 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과속 방지턱”(speed bumps) 역할을 하는 다공성이 적은 종이로 된 2~3개의 얇은 밴드로 감싸져 있고, 이는 담배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가장 흔한 화재안전기술

이다. 화재안전담배가 방치되었을 경우, 타고 있는 담배는 이러한 “과속 방지턱” 및 자기소화 (self-extinguishing) 중 하나에 이를 것이다. 화재안전담배는 ASTM E2187,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the Ignition Strength of Cigarettes에 근거하여 확립되어 있는 담배화재안전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 화재안전담배 개념도

[표 3]은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수행한 시험자료로서, 2004년부터 뉴욕 주(NY)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와 메릴랜드 주(MA), 캘리포니아 주(CA)에서 판매중인 여러 담배회사의 제품별 발화경향을 비교한 자료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뉴욕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의 발화경향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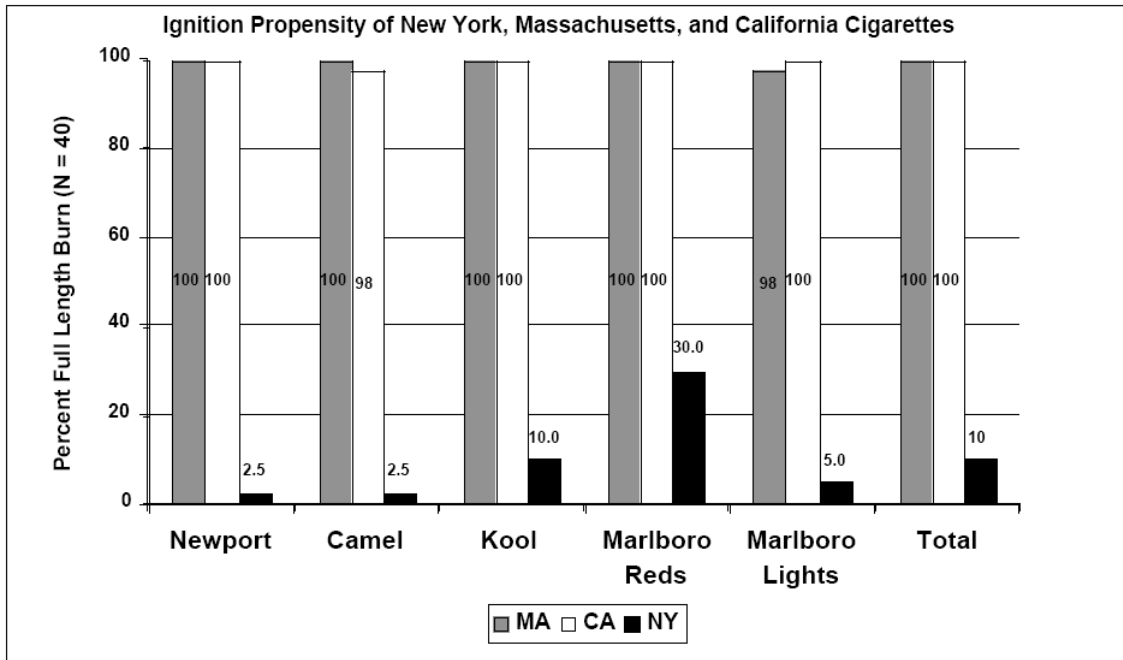
#### (4) 화재안전담배 도입 효과

최초로 화재안전담배에 관한 규제 법안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뉴욕 주의 예를 통해, 화재안전담배 도입의 화재예방 효과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뉴욕 주에서는 화재안전담배 도입 초기의 수치에서부터 뉴욕 주의 담배관련 화재 사망자들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의 담배시장의 독특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모조담배,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인터넷 및 각 주 상호간의 판매, 그들의 법이 실행 될 때까지 국경 인접 지역에서의 비-화재안전담배의 이용가능성), 2004년 중순 화재-안전 담배(FSC)법의 실행 이후, 뉴욕은 담배관련 화재 사망자가 상당히 감소해 왔다.

2006-2007년(뉴욕의 비-화재안전담배의 합법적 구매가 불가능했던 첫해) 동안 뉴욕은 연간 24명의 화재 사망자가 발생했었다. 이는 2002-2003년의 (매년 단위로) 38명에서 1/3(35%)이 감소한 수치이다(표 4).

2007년 말, 뉴욕의 소방 당국은 주법의 요구에 의해 모든 담배 화재의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보고하였다. 이는 비-화재안전담배(non-compliant cigarettes)를 확인하고 그것들의 출처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분석을 통해 2008년의 담배 화재와 관련하여, 상당한 숫자가 여전히 비-화재안전담배에 의한 사고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아직 근접 주에서는 일반적인 담배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화재안전담배와 일반 담배의 발화경향 비교

[표 4] 뉴욕 주의 흡연물질 화재 추이

(2004.6.28: 뉴욕 주 화재안전담배 법안 발효일 )

연도	흡연물질로 인한 화재	흡연물질에 의한 화재 사망자
1997		49
1998		38
1999		40
2000	1957	45
2001	2223	45
2002	2279	39
2003	2618	38
2004	2456	31
2005	2035	33
2006	1851	22
2007	2207	27
2008		

\* 출처: 뉴욕 주 화재 예방 사무국의 2009년 2월 통계자료

### (5) 화재안전담배에 대한 미신 및 오해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다양한 저항 또는 거부감을 나타내

는 것이 새로운 정책 시도 초기의 모습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호품인 담배에 새로운 물을 정하는 이 '화재안전담배' 정책에도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고, 잘못된 이해와 거부감도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오해 사례와 함께 '화재안전담배 연합'에서 제공하고 있는 답변을 소개한다.

### 미신: 화재안전담배는 더 치명적이다

발화성능이 저감된 화재안전담배가 일반적인 담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증거는 없다. 1993년 RJ Reynolds에 의한 보고서는 화재안전담배의 담배당 타르를 비교하기 위해 실행하였다. 보고서는: "revertant-per-mg-tar(타르당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양)이론 또는 revertant-per-cigarette(담배당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양) 이론에 근거한 실험 결과에서는 화재안전담배의 위해성이 일반적인 담배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중보건연구의 하버드 대학(스쿨)은 화재-안전 담배 및 이것과 일반 담배를 테스트하였을 때, 유독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 보고서에 의하면 "실험에서 발견된 14 종류의 유독성 화합물(14)은 화재안전담배와 일반담배 제품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다섯 가지의 화합물은 그 수치가 화재안전담배에서 약간 높았으나, 그러나 이러한 미량의 증가는 이미 담배 연기의 높은 유독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없다." 고 하였다.

### 미신: 사람은 화재-안전 담배에 대해 경솔하게 반응할 것이다.

RJ Reynolds에 의해 쓰여진 화재-안전 담배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1991년 보고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응답자가 애초의 흡연 습관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결론 맺었다. 전에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흡연 종류의 변화로 인해 갑자기 부주의하게 된다고 믿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고 보았다.

### 미신: 화재-안전 담배는 생명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NFPA의 Dr. John R. Hall은, 1980년대 중반 모든 주에 발화위험이 낮은 담배가 의무화 되었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년 1,000여 명의 사람을 구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5년 9월 21일, ABC 뉴스/ 관련 언론 보고서에서 뉴욕은 담배회사가 화재안전담배를 채택한 첫 번째 주가 된 이후에 흡연 관련 화재로 사망한 희생자의 수가 줄었다고 하였다.

### 미신: 스프링클러의 부족이 실제적인 문제이다

모든 미국 가정에 화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중국적으로 화재예방을 명확하게 개선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중적 화재안전 수단을 확실케 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화재 스프링클러는 이미 발생한 화재를 소화하는 것으로 이는 화재 예방의 실패를



의미한다. 연기 감지 및 경보장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화재 예방을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또한 담배가 취침 중 사람의 머리 근처에 떨어질 경우, 이는 연기만 나는 화재로 스프링클러가 적극 반응하기 전에 이미 의자/침대가 불에 타면서 사람을 사망케 할 만큼 충분한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담배화재의 특성 상 훈소(smoldering)가 발생하여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기엔 너무 적은 열기가 방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설비로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화재-안전 담배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단지 반-흡연 캠페인의 일종일 뿐이다.**

화재-안전 담배 연합의 관심사는 오직 화재 안전 및 담배에 의한 점화로부터 사망과 상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금연 또는 흡연을 덜하게 하지 않는다. 이는 흡연이(연소되는 담배가)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을 확실히 줄이기 위함이다.

**미신: 뉴욕의 감소된 담배 판매량은 화재-안전 담배를 요구하는 법안 때문이다.**

2005년 1월 하버드 대학(스쿨)의 공중보건 연구는 1년 전의 반응 시간과 비교해 그들의 규제에 따른 5개월 동안 뉴욕의 1인당 담배 판매량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뉴욕은 기준이 발효된 후 담배판매 및 면허세 지불이 감소되는 어떤 경험도 하지 못했다.” 담배수입의 2.5% 감소는 “월별 그리고 주마다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게다가,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많은 소비자들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판매의 감소는 감소된 흡연율과 같은 다른 요소에 기여하기 쉽다.

**미신: 주 담배세 수입이 사라질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공중보건 대학원은 새로운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의 세금 자료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화재안전담배의 판매로 뉴욕의 담배 판매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ASFM(미국 주 소방서장 연합회)의 의장이자 뉴욕 주 소방청장 James A. Burns는 주정부가 수입을 잃지 않았다고 동일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 3. 화재안전담배 법안 채택을 위한 노력과 그 결과

#### 시초

1929년, 메릴랜드 주 Lowell에서의 담뱃불 화재는 미국의 여성 국회의원 Edith Nourse Rogers의 이목을 끌었다. 그녀는 미 표준국(局)에 “자기-질식소화”(self-snubbing)담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요청했다.

Boston Herald American에 보도된 1932년 3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연구한 지 3년이 지나 표준국은 “자기-질식소화”담배를 개발하였고, 담배 제조업자에게 이 기술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 권고를 받아들인 담배 제조업자는 없었다.

1974년, 미국 의회는 “자기-소화”(self-extinguishing)담배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원 의원 Phil Hart(D-Michigan)이 발의한 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Hart의 법안은 미 하원에 있는 담배업체 로비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 뒤, 담배업체 로비에 의해 미국 국회 및 Ford 대통령은 담배를 규제하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권한을 없애기 위해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규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을 개정하였다.

### 일반 대중 운동(Grassroots campaign) 착수

1979년 5월 24일, San Francisco General Hospital에 기반을 둔 Trauma Foundation이 조직되었다. American Burn Association 및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Chiefs에 의해 지지되는 “화재-안전”담배(FSC)에 대한 일반 대중 운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14개의 도시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이 열렸다. Mother Jones 기사에 따르면 “담배와 소파: 어떻게 담배 로비 단체가 집을 불타게 내버려 두고 있을까? (1979년 6월/7월 호)라는 FSC의 역사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제공하였고 각 기자회견에서 매체로 배포하였다.

범국가적으로 뉴스보도가 된 Trauma Foundation이 운동을 시작한지 4일이 지나, 하원 의원 Joe Moakley의 선거구인 Westwood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담배로 인한 화재는 5명의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를 죽였고, Moakley 의원은 차후의 담배화재로 인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FSC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 1980년에는 Alan Cranston 상원 의원, 1984년에 John Heinz 상원 의원이 참여했고, 미국 의회에 FSC 법안이 발의되었다.

1980년대, 국회의 노력으로 주(state) FSC 법안이 발의되었다. 1980년, 오리건 주는 FSC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1982년 5개 이상의 주에서 FSC 법안이 발의되었고, California, Massachusetts, Connecticut, Michigan, and Illinois 등이 이에 포함된다. 1983년, New York, Maryland 및 Virginia에서 FSC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Rhode Island, Maine, Alabama, Hawaii, Alaska, New Jersey, Pennsylvania, Wisconsin, Minnesota, Washington, New Hampshire, Vermont, Texas, Colorado, Georgia 및 Kansas에서 FSC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로 인해, 국회에는 담배로

인한 화재예방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치적인 압력이 생겼다. 1984년 8월, Reagan 대통령은 Moakley의 담배안전법안(Cigarette Safety Act)에 서명하였고, 3년 동안 300만 달러의 연구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는 국회의 지시로 구성된 기술 연구 단체(Technical Study Group [TSG])에 의해 감독되었다. 그 단체의 15명은 연방정부(5명), 담배 제조업체(4명), 가구 제조업체 단체(2명), 소방서 단체(2명), 그리고 의료단체(2명)를 대표하였다. 1987년, TSG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회 보고서”(Report to Congress)를 발행하였고, “감소된 발화 경향”(reduced ignition propensity)을 가진 화재안전담배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함을 서술하였다.

1990년, Bush 대통령은 Moakley의 화재안전담배 법안에 서명했고, 담배의 화재안전 수행 기준에 대한 “테스트 방법”(test method)을 개발하기 위해 3년 동안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1993년, 기술 자문 단체(Technical Advisory Group[TSG의 멤버와 동일])는 “테스트 방법”이 개발되었던 것과 같이 국회로 보고된 연구사항을 감독하였다.

## 방향의 전환

1999년, Moakley는 그의 마지막 화재안전담배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것은 담배화재 안전 기준의 제정을 요구하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발효일 후 18개월 이내에 이 기준을 실행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Moakley의 사후, 상원 의원 Durbin(일리노이 주)과 Brownback (캔사스 주), 그리고 하원 의원 Markey 및 King은 Moakley의 화재안전담배 법안을 재발의하였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워싱턴의 정치 여론이 담배 규제에 대해 점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에서 주(state by state)로 그 운동을 전환하였다. 2000년 8월 뉴욕은 연방정부의 연구로부터 개발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는 법을 시행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뉴욕의 규제법안은 2004년 6월 28일 실행되었다. 이것은 역사상 담배제조업을 규제한 첫 번째 법안이었다. 2005년 10월 1일, 캐나다는 그들의 법이 발효되어, 이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는 FSC를 의무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 현재의 채택 현황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가 이미 법안을 발효하여 시행중이고, 20개 주는 법안이 통과되어 곧 실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직 와이오밍 주만이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미국 전역의 인구비율로 99.9%가 화재안전담배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규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주 및 국가에서는 뉴욕 FSC 법에 기반을 둔

FSC 규제 법안의 “표준 법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담배화재 안전규정 하에 담배 제조업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FSC를 스스로 제조할 수 있다. 그때까지 FSC를 의무화시키는 입법상의 운동들은 계속 펼칠 것이라 한다.

#### 4. 결론

1929년 최초로 시작된 화재안전담배 도입을 위한 캠페인이 거의 80년 가까이 걸쳐 미국에서 정착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연구, 의논이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정치적, 과학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의 결과물이 미국의 현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화재안전담배에 대한 논의가 이제 걸음마를 댄 상태이지만 외국의 선례를 참조하여 의견을 수렴한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시행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배울 수 있다.

#### 참고문헌

1. [www.firesafecigarettes.org](http://www.firesafecigarettes.org)
2. THE SMOKING-MATERIAL FIRE PROBLEM(John R. Hall, Jr. NFPA, November 2007.
3. "'Fire Safer'" Cigarettes, The Effect Of The New York State Cigarette Fire Safety Standard On Ignition Propensity, Smoke Toxicity, And The Consumer Market, A Preliminary Report(Hillel R. Alpert, Carrie Carpenter, Gregory N. Connolly, Vaughan Rees, Geoffrey Ferris Wayne,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January 24, 2005)
4. 2007년도 화재통계연감

📁 참고자료

### 담배의 화재안전 기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경기도와 KT&G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담뱃불 화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섰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30일 담배의 화재안전 기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담뱃불로 인한 화재건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경기도는 지난해 1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총 796억원의 배상청구액을 산정한 후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재안전담배 제조를 의무화 하고 있어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해 규정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안에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조 및 수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미리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화재안전담배임을 인증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안전담배임을 알리기 위해 제조하는 담배에 화재안전담배 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및 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 2010.4.6]

작성 : 광주호남지부 유호정 대리